

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10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11. 15.
- 라. 회부일자 : 2023. 11. 15.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3. 설치근거

- 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6조
-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4.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가. 기금사업의 목표
 -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
- 나.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
 -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

5. 2024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금명	2023년도 말 조성액 [㉠]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 [㉡] $e = d + a$	비고
		수입 [㉢]	지출 [㉣]	증감 [㉤] $d = b -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535,857	745,451	0	745,451	21,281,308	

나.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2024년도 말 조성액 [㉠]	용자금 미회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d = a + b -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281,308	0	0	21,281,308

다. 자금 운용 계획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계	745,451	497,829	247,622
이자수입	745,451	497,829	247,622

○ 지출계획 : 없음

6. 검토의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 회계연도 내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각종 회계, 기금의 통합적 관리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2021년도에 설치되었음.

○ 재정안정화 계정 재원

-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결산 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용도

-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본 계획안은 세수여건 악화시 일반회계로 전출 활용하기 위함으로 금천구의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됨. 향후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할 경우 세밀히 검토후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련법령 1부. 끝.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12.>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동)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20.12.31 조례 제1128호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2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금 용자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의 운용
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
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
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31.>
2.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지방회계

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제8조제1항의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과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통합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자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예탁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 예탁 시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③ 예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예탁금을 제2항의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상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한다.

제11조(예탁금 증서 교부)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 받은 경우에는 예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기금의 용자) ① 통합기금의 용자는 통합 계정에 예탁한 다른 회계·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기금의 용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용자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

2. 재무구조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③ 통합기금의 용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7조의 심의위원회가 개최 될 경우, 구청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용자기간) 구청장은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통합 계정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금으로 용자하는 경우 용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범위에서 제7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4조(용자신청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 계정에 적립된 통합기금을 용자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용자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에서 자금을 용자 받고자 하는 부서(이하 “용자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용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용자금의 원금 상환) ① 용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자 약정 시 결정한다.

② 용자부서에서 용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기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용자부서에서 납부하는 원금 및 이자와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용자금의 원금과 이자, 연체금의 상환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을 상환일로 한다.

제16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금 및 용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용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금 및 용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